



보건복지부



장애인이 행복한 나라,
따뜻한 대한민국

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위한

장애인 연금제도 이용 안내



보건복지부



보건복지부 장애인 인식개선
홍보대사 이정진



1 연금 대상자는 누구인가요?

기본자격

18세 이상의 생활이 어려운 등록된 중증장애인

- 1 **나이** 신청월 당시 만18세 이상
- 2 **생활환경**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

소득인정액이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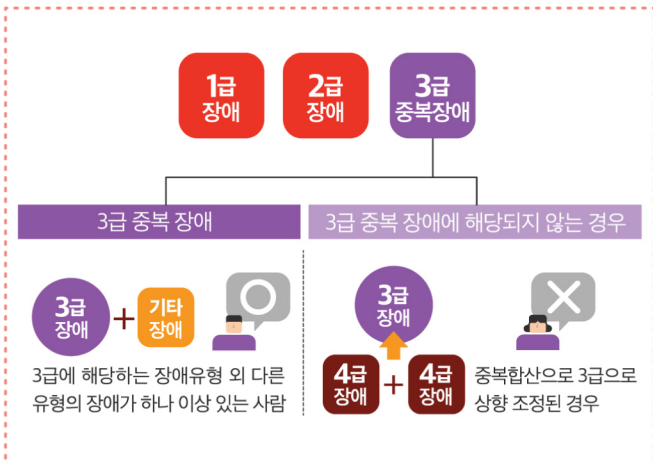
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



선정기준액

단독가구 - 58만원, 부부가구 - 92만 8천원

- 3 **중증장애인** 장애 등급이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사람



2 연금의 종류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?

연금의 종류

장애인연금 = 기초급여 + 부가급여

1 기초급여

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

지급 대상 만 18~64세 중증장애인
(만 65세 이상은 기초노령연금으로 전환)

지급 금액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 평균 소득의 5% 지급 (2013.4~2014.3 월 96,800원)

기초급여액 지급 감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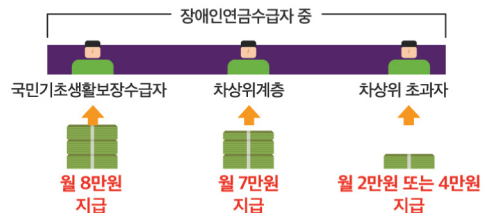
부부 모두 장애인연금 수급자이거나 소득인정액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, 기초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

2 부가급여

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

지급 대상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차상위 초과자

지급 금액 대상 별 차등 지급



3

장애인연금의 신청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신청방법

1 신청서 작성



-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
- 소득 재산 신고서
-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(본인 및 배우자)
- 위임장 (대리 신청 시)
- 주택·건강보험료 제공동의서
(중증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자녀와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만 제출)

2 신분증 및 통장사본 준비

본인 신청 시	대리 신청 시
<p>신청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, 여권 등</p>	<p>대리인의 신분증</p>
<p>본인명의로의 통장사본 압류 방지를 위해 연금수급만을 위한 별도 통장개설 권장</p>	<p>위임장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</p>

3 신청

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·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



4 심사



신청자의 자산조사(시·군·구) 및 장애등급심사(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)

5 결과통보



지급 대상자의 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에서 수급자 결정 및 통보

6 지급



매월 20일 연금 지급
(토요일·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)

!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

7 이의신청

- 대상 장애인연금 자격, 장애등급 심사 결정 등
- 기한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
- 장소 관할 읍·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

8 결과통보

지급 대상자의 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에서 수급자 결정 및 통보



관련 기관 정보

■ 보건복지부 - 장애인 연금제도 전반 안내

- 보건복지 콜센터 : 국번 없이 129 (www.123.go.kr)
-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: www.mw.go.kr
-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 : www.bokjiro.go.kr/pension

■ 국민연금공단 - 장애등급 심사제도 안내 (장애등급 판정 관련 민원상담)

- 국민연금 콜센터 : 국번 없이 1355
-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홈페이지 : 포털사이트에서
“장애심사센터” 검색

■ 지방자치단체 복지 담당자 - 서비스 신청 접수, 대상자 결정·통지, 인적 사항·소득·재산 관련조사, 제도상담 등

- 담당자 :
- 연락처 :

■ MEMO



보건복지부